

대학원 물리학과 운영 내규

1. 기존 학과 내규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2.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내용은 필수로 정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달리하여 작성. 단, 석사학위 논문대체를 시행하는 학과에서는 제16조와 제17조를 필수로 정하여야 함
3. 기존 학과 내규가 있는 학과에서는 2번을 반영하여 작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물리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물리학과 소속 교수들은 물리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과목개설) 물리학과의 과목개설은 물리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물리학과의 교·강사 배정은 물리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배정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물리학과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기 시작전후로 선정 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물리학과의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석사: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1편당 1과목 면제
SCI(E)급 제1저자 1편당 2과목 면제

박사: SCI(E)급 제1저자 1편당 2과목 면제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물리학과의 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해당학기에 위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맡으며, 출제 위원장은 해당학기 학과장이 담당 한다.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다.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으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물리학과의 종합학력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물리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학위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과목들에 관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 과정

① 기본과목 :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2) 박사 과정

① 기본과목 :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② 전공과목 1과목 : 고체물리학, 광학, 이론물리학, 응집물질물리학 분야 중 택일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물리학과의 대학원생의 외국어 시험 과목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물리학과의 학위취득은 학위논문 제출로 규정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물리학과의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제14조 (예비발표)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물리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